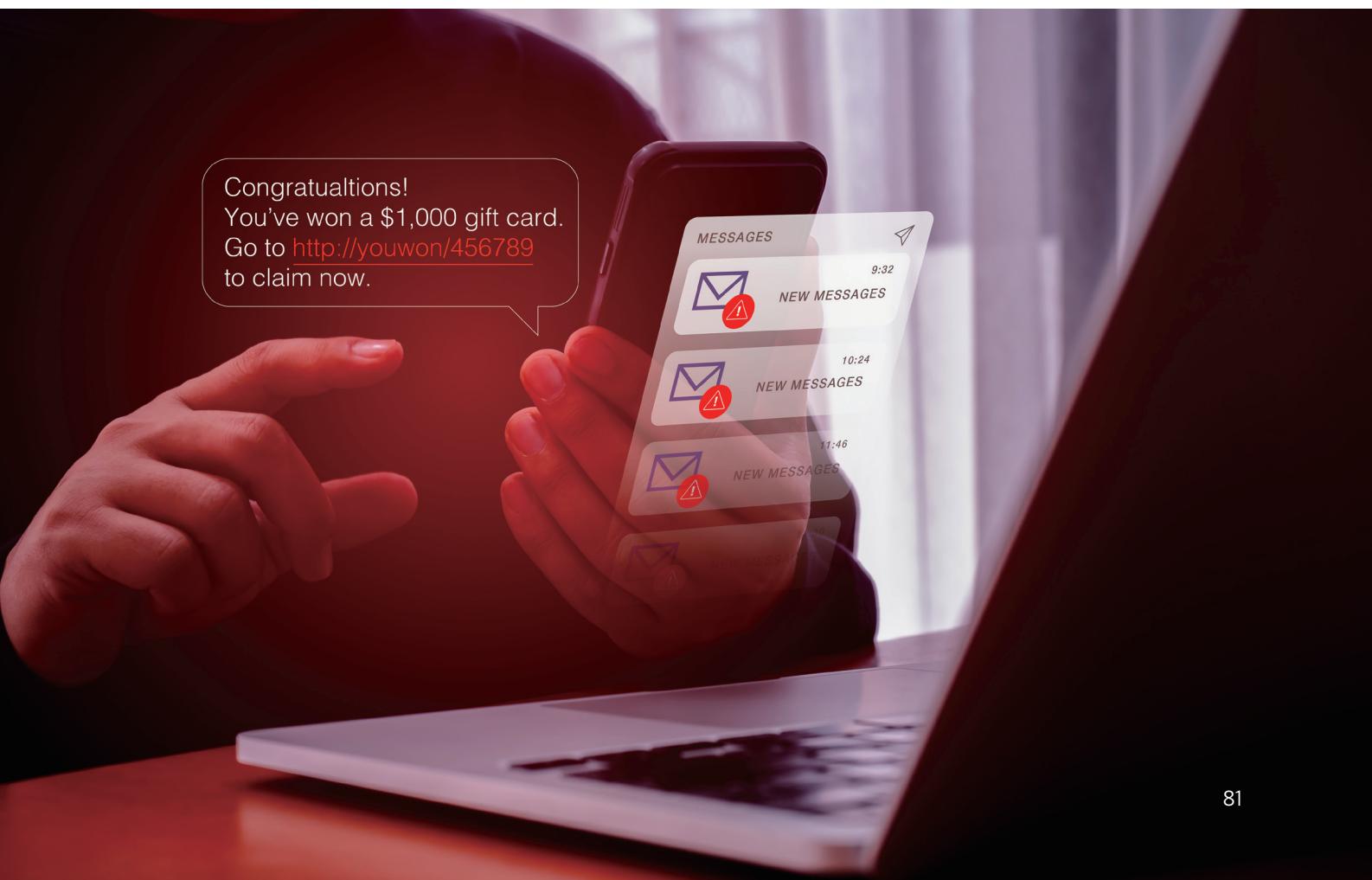


# 클릭 한번의 방조: 허위 링크, 당신도 책임질 수 있다

글 |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인터넷은 온 세계를 거미줄처럼 연결시켰다. 이름하여 '월드와이드웹(www)', 그 이름 그대로다. 인터넷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링크(link)'다. 링크를 타고 공간과 공간, 정보와 다른 정보가 연결되고 다른 공간 내지 정보로의 이동은 쉽고, 빠르고, 편리해졌다. 연결된 세상에는 그늘도 있기 마련이다. 나쁜 정보, 오염된 정보 역시 쉽고, 빠르고, 넓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기업·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링크 기사와 그 문제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Q

‘디시인사이드’, ‘네이트판’ 같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링크 기사로 인해 기업·기관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허위로 밝혀졌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기사인데 해당 기사를 링크시킴으로써 피해가 확산되는 것이다. 이들 링크 기사에 관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나아가 정정이나 반론보도의 개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

A

### 클릭으로 시작된 확산,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옮기고자 하는 기사의 URL을 단순히 ‘복붙’만 하면 되니 링크를 활용하면 게시물 하나 금세 똑딱 만들 수 있다. 게다가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니 그 내용에 대한 책임감도 크지 않다. 저작권 측면에서도 링크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되지 않아 법적으로도 안전한 편이라고 알려져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링크 기사의 주된 유통 경로가 된 데에는 그 공간적 특성도 한 몫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로 공통의 관심사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 이른바 ‘확증편향’이 생기기 쉽고, 이용자 상호 간의 건전한 비판과 토론을 통한 검증 기능이 작동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은 익명으로 작성된다. 이로 인해 게시물에 대한 책임의식은 더욱 희박해진다. 그런데 기사 링크 행위의 의미를 이렇게까지 가볍게 취급할 일이 아니다.

우선, 링크된 기사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링크 행위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나 책임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허위보도이거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기사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해당 언론사 혹은 담당 기자의 책임과는 별개로, 문제의 기사를 링크시킨 사람에게 공동의 책임, 즉 형사적으로는 방조범으

로서의 책임이, 민사적으로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형사적 문제와 민사적 문제를 구분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 링크를 단 순간, ‘공유자’에서 ‘공범자’로

지난 2021년 우리나라 대법원은 링크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크게 변경했다. 종전까지는 링크 설정에 관해 ‘복제’나 ‘전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었다. 그런데 2021년 판결(2017도 19025)에서 대법원은 링크 행위를 범행에 대한 일종의 ‘방조’로 간주했다.

“링크 행위는 그 의도나 양태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방조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 원활한 정보 교류와 유통을 위한 수단이라는 링크 고유의 사회적 의미는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방조란, 어떤 식으로든지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링크 그 자체는 별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링크된 내용으로 인한 법적 침해를 확산시킨다. 링크가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고려하면, 개념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링크와 방조는 상당히 유사하다. 물론, 모든 링크 행위가 방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링크 대상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연결시켰어야 한다.

대법원은 “행위자가 링크 대상이 침해 게시물 등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방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링크를 범죄에 대한 방조에 준하여 취급하게 된 배경에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 즉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하지 않으면 …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했다. 사후 방조, 그러니까 범행이 끝난 후 방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물리적 공간과 다르게, 온라인 공간에서는 방조의 가능성이 매우 확장되는 것이다.

방조가 형사처벌에 관한 엄격한 법적 개념이라면, 공동불법행위는 손해배상으로 대표되는 민사법적 개념이다. 방조에 비해 공동불법행위는 훨씬 넓고, 쉽게 성립될 수 있다. 특히, 링크 대상이 위법한 게시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어도 공동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내가 단 링크로 인해 확산된 피해에 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전체 피해에 대해서도 연대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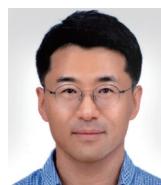
### 정정보도는 불가 …

#### 민사 책임은 피할 수 없어

손해배상책임 외에 기사에 관해서 인정되는 정정 및 반론보도 게재 의무가 링크 기사에 관해서도 인정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정·반론보도는 안 된다.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정정·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반드시 언론사여야 한다. 링크 기사 게시자는 언론사가 아니기에 정정이나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신, 민법 제764조를 활용한 보완적 구제수단이 있다. 링크의 대상이 된 언론의 기사에 관해서 정정·반론보도를 받은 다음, 이를 근거로 링크 기사 게시자에게도 정정·반론보도에 대한 링크를 달거나 아니면 링크 기사 하단에 직접 정정·반론보도문을 게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

이다. 이는 전형적인 정정·반론보도가 아닌, 민법 제764조에 근거한 명예훼손에 적당한 처분의 일환이다.



필자 |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본부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